

[별첨2]

원격 수업 수강을 위한 기기 대여 신청서

3. 대여 절차

- 대여를 희망하는 학생은 구글 설문 링크로 예약 접수
 -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 지정한 대여일시에 신분증(학생증 혹은 주민등록증)을 지참하여 본인이 직접 방문
 - 대여신청서 작성
 - 신분증(학생증 혹은 주민등록증)을 제시, 본인 확인하고 대여에 대한 신청서를 작성하고 물품을 수령

1

- 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

-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 또한 본인은 기기를

- 대여 받아 사용할 때 외 나한은 환이하연으며 선실허

- 내에 끌어 사용할 때 규 사용을 확인하였으나 경구에
도움이 되는 듯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.

- 대여 장소에서 제품의 이상 유무 확인 후 사용
 - ※ 대여 물품에 대한 이상 유무를 사전 반드시 대여자가 확인하여야 하며, 확인 절차의 소홀로 인한 모든 사항은 대여자가 전적으로 책임
 - 반납 날짜에 반납
 - 대여 및 반납은 평일 오전 9:00 ~ 18:00 (12:00~13:00 점심시간으로 중지)에 가능

4. 반납 및 연장

- 대여 기간 내 반납을 원칙으로 함
 - 기기 대여자가 졸업, 제적 및 휴학일 경우 지체 없이 기기를 반납해야함
 - 기기 대여자가 연장을 원할 경우 신청 대기자 명단 순서의 끝으로 옮기거나 대기자간 연우 경우 재여자로 가능함

울라가네
[예체]

- 대여 기기의 반납기한이 지나도 반납하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다음 대여에 불이익이 있음
※ 반납 예정일~3일 이내 : 1개월 대여 정지 / 4일 이상~1주일 이내 : 2개월 대여 정지 / 1주일 이상 : 3개월간 대여 정지 / 2주일 이상 : 6개월간 대여 정지 / 1달 이상 : 영구 정지

6. 분실·손상 처리

- 대여 후 분실 및 손상의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음
 - 기기 분실 시, 동일한 노트북으로 변상해야하며, 동일한 장비를 구할 수 없을 시에는 물품 취득 금액을 변상함
 - 기기 손상 시, 제조사 AS 후 청구된 금액 전액을 보상하거나 대여자가 대여 전의 상태로 복원시켜 반납 하여야 함

7. 자료에 대한 책임

- 교수학습개발센터에서는 반납된 기자재에 남아있는 개인자료를 보존할 의무가 없으며 이에 대한 망설 책임은 대여자에게 있음

본인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. 또한 본인은 기기를 대여 받아 사용할 때 위 사항을 확인하였으며 성실히 준수할 것을 약속하겠습니다.

교수님은 위 사항을 학생이 지킬 수 있도록
지도 바랍니다.

20 년 월 일

한국체육대학교 교수학습개발센터장 귀하